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종합의견서(1회)

1	OI	바혀화	
-	. =	무단연왕	

발주기관	서울특별시	도시기	기반시설본부	공사명	하남선(5호선연장) 궤도공사(1공구)							
계약방법	장기	장기계속공사				천운궤도	주식회사 닉		찰률			
	총 공사 계약 현황 (부기 금액)					진행 중인 공사 계약 현황(1차공사)						
계약현황	계약일	2017	'년08월29일	계약금액	5,799,448,000 원		계약	약일	2017년12월	월18일	계약금액	267,400,000 원
	착공일	2017	'년09월01일	준공예정일	2018년12월31일		착공	공일	2017년09월	월01일	준공예정일	2017년 12월 31일
물가변동 조정현황	조 정 횟 수		1회	1회 2회			3회		4회		5회	
	조 정 방 법		지수조정									
	조 정 기 준 일			2018년01월01일								
	조	정	율	4.49 %	i							
	조	정 금	} 액	193,218,	000 원							

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내용

물가변동 조정율 [A]	4.49 %	물가변동 경과기간	124 일	입 찰 일(기준시	점): 2017	년 08월 18일	
				계약체결일(기준시	점): 2017	년 08월 29일	
				조정기준일(비교시	점): 2018	년 01월 01일	
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[B]		의 5,799,448,000 원		물가변동 조정 기준일	예정공정율	25.02 %	
				현재의 공정율	실행공정율	5.47 %	
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[C]		1 400 125 000 81		물가변동 적용대가		4 202 242 000 Pl	
			1,496,135,000 원	[D] (D = B - C)	4,303,313,000 원		
선금급	급 공제금액			물가변동 등락금액		102 210 000 9	
[F]				$[E] (E = D \times A)$	193,218,000 원		
기타 공제금액 [G]		-액		물가변동 조정금액			
				[H] (E - F - G)	193,218,000 원		

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서류

번호	첨부 서류명	부수	비고
1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		붙임 2 참조
2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산출근거		붙임 3~11 참조
3	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참고자료		붙임 12 참조

4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종합의견

위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첨부자료의 내용은 계약체결일(또는 직전조정일) 및 조정기준일 당시의 물가변동 기초자료의 내용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으며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와 계약예규 "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"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검토한 바 3% 이상 상승하였으며, 물가변동 경과기간도 90일 이상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, 귀 기관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제출합니다.

2018. 07.

기관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(직인)

- 주 1. 물가변동 조정 대상공사가 2건 이상인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고 합계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.
 - 2. 물가변동 대상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